

노숙인 주거안정 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		
사업비 (당해년도)	3,225,098천원	(국비)	(사비)3,225,098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자활지원과	강재신 2133-7480	신종철 2133-7482	김경림 2133-7499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
계	(x-) 2,760,252	(x-) 3,225,098	(x-) 464,846	(x-) 17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2,760,252	(x-) 3,225,098	(x-) 464,846	(x-) 17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임시주거지원	=	819,000천원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
	- 월세 900명*3월*270,000원	= 729,000천원
	- 생필품비 900명*100,000원	= 90,000천원
	○ 주거지원대상자 사례관리	= 605,457천원
	- 인건비(11명) 44,850,000원*11명*1.02	= 503,217천원
	- 운영비 120,000원*12개월	= 1,440천원
	- 사업비(방문출장, 프로그램 운영 등) 1,200호*7,000원*12개월	= 100,800천원
	○ 지원주택 운영(258호)	= 1,695,750천원
	- 인건비(43명) 1,537,650,000	= 1,537,650천원
	- 사례관리비(프로그램 포함) 59,700,000원	= 59,700천원
	- 운영비(커뮤니티공간 지원) 98,400,000원	= 98,400천원
	○ 후원물품 저소득층 지원사업	= 104,891천원
	- 인건비(2명) 51,417,000원*2명*1.02	= 104,891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초기지원으로 자립 가능한 신규노숙인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고시원, 쪽방 등을 지원해 탈거리노숙 및 자립유도
- 시설 입소자 중 자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,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 유도
- 정신질환, 알코올의존증 노숙인에게 입주 연계 및 사례관리 지원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(자활지원과-962, '19.1.21.)

- 노숙인·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(자활지원과-5014, '15.10.19.)
-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(자활지원과-7191, '19.5.28.)

□ 사업내용

- 임시주거지원
 - 지원내용 : 월세, 생활용품비, 주거유지 프로그램, 주민등록 복원 등 지원
-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자 사례관리
 - 지원내용 :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 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
 - 관리방법 : 전담 사례관리자 11명 배치, 1인당 100세대 내외 관리
- 지원주택 운영
 - 지원내용 :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질환 만성 노숙인에게 주거와 사례관리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지원
 - 확대추진 : '19년부터 지원주택 100호, '20년부터 매년 60호 추가 지원
 - 사례관리자 배치기준 :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5명당 사례관리자 1명, 정신질환 7명당 1명 배치 지원
 - 지원내용 : 거리노숙인 등에게 원룸형 주거공간 및 집중사례관리 지원
 - 운영규모 : 12개동 140호

□ 추진경위

- '10.10월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시행
 - 추진배경 :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노숙인 대책으로 추진
- '11.08월 흑한기·흑서기 임시주거지원 시행
 - 추진배경 : 서울역사내 노숙인 강제퇴거('11.8.22) 조치 관련 특별보호대책으로 추진
- '12.04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시행(한시 → 상시사업)
- '12.07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시행
- '15.10월 노숙인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('16.1월부터)
- '16.10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수립
- '18.07월 임시주거지원 확대 추진 운영계획 수립(600명 → 900명)
- '19.05월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수립(시범사업 → 본사업)
- '20.04월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수립

□ 2021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계		3,225,098	
기본계획 수립	2021.01~2021.01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21.01~2021.12	3,225,098	분기별 신청 및 교부(재배정)
보조금 집행 정산	2022.01~2022.02		교부금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8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주거 : 월세 지원 862명, 생활용품 지원 679명 ○ 매입임대주택 등 방문상담 : 7,804건 ○ 지원주택 운영 : 38호
2019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주거 : 월세지원 880명, 생활용품 지원 695명 ○ 매입임대주택 등 방문상담 : 8,684건 ○ 지원주택 운영 : 80호
2020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주거 : 월세지원 513명(9월말 기준), 생활용품 지원380명 ○ 매입임대주택 등 방문상담 : 7,254건 ○ 지원주택 운영 : 140호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거리 노숙인에게 한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여 거리노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,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거리노숙 감소
- 시설 퇴소를 앞둔 노숙인에게 매입임대주택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노숙을 예방
- 알코올의존증, 정신질환 만성노숙인에게 주거와 전문 사례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탈노숙 유도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
2017	(x-) 1,614,200	(x-) 0	(x-) 0	(x-) 1,614,200	(x-) 1,613,394	(x-) 0	(x-) 806
2018	(x-) 1,389,008	(x-) 0	(x-) 0	(x-) 1,389,008	(x-) 1,370,963	(x-) 0	(x-) 18,045
2019	(x-) 2,233,406	(x-) 0	(x-) 0	(x-) 2,233,406	(x-) 1,935,950	(x-) 0	(x-) 297,456